
2018년 7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8.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8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4. 6.(금) 11:00 ~ 11:50
-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심의위원 : 정호경, 성춘일, 이유진, 전진한, 최진수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1건
 - (2018-23)2004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소속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인용

【 의안번호 2018-23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2004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소속

※ 회의내용 중 개인정보 등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안녕하세요?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심의위원으로 성춘일 위원님, 이유진 위원님, 전진한 위원님, 최진수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청구인 이의신청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안번호 제2018-23호 도시계획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안건 소관부서 팀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입장)

○ 안건 소관부서 팀장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도시계획과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도시계획과 소관 안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23호 도시계획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2004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과 소속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위원 명단은 해당법령에 따른 비공개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팀장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팀장〉

- 2012년부터 여러 차례 도시계획위원의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요청들이 있었고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사실 인용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 위원〉

- 내용 자체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 팀장〉

○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1년 전에 한번 심의했던 사건이라 다루었던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관부서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팀장〉

○ 2012년부터 여러 차례 정보공개심의회 때 도시계획위원의 명단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가 인용되어 있어서 저희도 주관부서에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침상으로 또 2012년 이후부터 위원 명단들은 공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런데 2004년의 위원 전체명단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이유는 지금 도시계획위원님들은 본인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2004년의 위원들은 그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고, 대학교수 분들이나 도시계획의 전문가 분들로 현재도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본인들의 명단들이 공개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첫째 본인동의를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고심을 했습니다.

○ 두 번째,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목동1단지~3단지까지의 2종에 관한 종세분화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목동1단지부터 전체 개발이 되면서 3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1단지~3단지까지는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됐고, 여러 차례 도시계획위원

회의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특별한 얘기가 없이 2종으로 잘못 결정돼서 재산권에 피해를 봤다'며 종 회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 주관부서 입장은 목동1단지~3단지의 종세분화 결정은 매뉴얼대로 적정하게 처리됐고, 만약에 종상향이 된다면 종상향에 따른 여러 가지 기부채납들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는 상황 속에서 더불어서 도시계획위원님들에 대한 공격이나 폭언이 우려되고, 예전에 모 대학의 교수님을 학교로 찾아가서 시위를 하신 상황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부득이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 위원>

-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만 정리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명단 전체는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다만, 회의의 참석위원 명단은 아직 공개 안 하는 것이죠?

<○○○ 팀장>

- 그렇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드리면 대부분의 서울시 위원회들은 거의 풀(fool)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은 전체 30명이 매번 참석대상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못 오실 경우에는 그분들이 정족수에서 빠지는 것 뿐 다 참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2011년 이전은 원칙적으로 전체위원 명단도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 팀장>

- 그렇습니다.

<○○○ 위원>

- 간혹 사건·사고가 있어서 수사가 들어갔을 때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 그 정도죠?

<○○○ 팀장>

- 그렇습니다.

<○○○ 위원>

- 서울시 위원회 중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들이 있습니까? 2012년부터 도시계획위원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것은 거의 다른 위원회들은 다 공개한다는 의미죠?

<○○○ 팀장>

- 서울시 시정의 주요목표 중에 하나가 모든 것들을 공개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2012년부터 시의 기조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부터 위원명단을 전부 공개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따라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 대표적으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징계 부분들이 있으니까 명단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 2012년부터 공개한 것은 내부방침으로 해 가지고 공개하는 것이고, 해당 법률에 공개하라는 이런 근거규정이 있는 것은 없으시죠?

<○○○ 팀장>

- 네.

<○○○ 위원>

- 2004년 12월 31일자로 위원들 임기는 다 종료된 상황이고, 그 이후에 임기가 연결된 것은 아닌 것이죠?

<○○○ 팀장>

- 2015년인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임기의 한 팀, 그러니까 2년을 쉬면 재위촉될 수 있어서 이 중에서 몇 분은 현재 위원으로도 계십니다.

<○○○ 위원>

- 어쨌든 2004년도 당시에 위원 분들의 임기는 법이나 근거에 따르면 다 종료되신 분들인 것이죠?

<○○○ 팀장>

- 종료는 된 겁니다.

〈○○○ 위원〉

- 참고자료에 나오는데, 과거에 파이시티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2005년도, 2008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위촉위원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까지 서울시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2005년도 명단은 공개했는데, 2004년 것을 비공개할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 팀장〉

- 2012년 4월 30일에 정보공개심의회 의 안건 목록을 보면 도시계획위원의 명단 및 회의록의 공개여부에서 공개하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파이시티처럼 특정사안이 비리 의심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증빙을 위해서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히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사안과는 그 이익이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 2005년 명단을 공개하고 2004년 것을 비공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공개결정을 한 것이고, 2012년 이후로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은 그 전 명단까지 공개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 당시에 공개한 겁니다.

〈○○○ 팀장〉

- 일단은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이 있으면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관부서에서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어떤 지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들은 사실 위험부담이 있는데 그런

데 일반적으로 법률관계에서는,

〈○○○ 위원〉

- 저도 의문이었는데 그 전까지 당연히 소급하라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 2012년 당시에 2005년, 2008년 명단에 대한 청구가 많이 들어와서 공개를 한 것이고, 2004년 명단을 그때 청구했으면 아마 그때도 공개했겠죠. 지금 다시 비공개한다는 것이 논리적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 위원〉

- 그러면 ‘정말 이 2004년 명단을 공개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의 논의를 해 보죠. 2012년부터는 자체로 공개를 해 왔는데 그 이전에 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 보죠.

〈○○○ 위원〉

- 2005년 공개분 같은 경우는 기사를 보니 이름하고 직업 정도만 공개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자료에는 근무지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부서에서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공감되는 게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명단이랑 근무지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는 것은 이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작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만약에 공개를 하더라도 기사에 나온 것처럼 직업을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 외에 소속을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때도 소속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 위원>

- 공개여부는 결론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만약 공개를 한다면 ‘○○○ ○○대학교’,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렇게만 공개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죠.

<○○○ 위원>

- 기사에는 ‘○○○ 교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 위원>

-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소속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 위원>

- 공개의 취지 자체가 본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 소속을 비공개한다면 그것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 위원>

- 도시계획위원회가 2004년 당시에 위원들의 전체풀이 몇 명이었습니까?

<○○○ 팀장>

- 전체 당시 풀은 현재 저희가 제출한 명단을 보면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참석명단이라는 것이 특정회차의 참석명단을 달리는 겁니까?

<○○○ 팀장>

- 2004년도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달라는 겁니다.

<○○○ 위원>

- 2004년 전체명단입니까? 아니면 각 회차별 참석자 명단입니까?

<○○○ 팀장>

- 전체명단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씩 열리고 있고요, 보통은 1년에 한 24회 정도 개최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

- 그 당시 회의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 팀장>

- 회의록 작성을 했고요,

<○○○ 위원>

- 그 당시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하였습니까?

<○○○ 팀장>

- 회의록 공개했습니다. 회의록 공개 시에는 발언을 한 위원의 이름, 개인정보는 다 지우고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정보공개법의 공개방법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와서 열람하고 메모는 해갈 수 있지만 사진을 못 찍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개

를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 팀장>

○ 네.

<○○○ 위원>

○ 이름만 지운 것이죠? 내용에서 개인을 알 수 있는 것, ‘나는 무슨 어디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와 버리는데, 그런 내용은 건드리지 않은 것이죠?

<○○○ 팀장>

○ 회의록 안에서 그 사람을 개인정보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지우고 공개합니다.

<○○○ 위원>

○ 2004년 전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공개하지 않은 선례가 있습니까?

<○○○ 위원>

○ 그때는 공개를 안 했죠.

<○○○ 위원>

○ 위원들은 다 그 당시로는 비공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까?

<○○○ 팀장>

○ 맞습니다.

<○○○ 위원>

- 비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자유롭게 발언을 한 것이겠네요?

<○○○ 팀장>

-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지우더라도 매칭을 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지웠다고 보시는 겁니까?

<○○○ 팀장>

- 저희는 완벽하게 지웠다고 보고요. 2012년 이전에 도시계획위원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로비가 엄청났던 점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임기가 종료되신 분들에 대한 사항이라면 비공개 목적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로비의 리스크는 없어진 상황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측면에서의 우려는 2004년도 위원의 명단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다른 측면에서 2012년도부터 공개하기로 한 것을 소급해서 할 수 있는지, 혹은 개인적으로 공개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쟁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소

속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명단으로 공개되는 것이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측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private한 정보가 아니고 그냥 내가 위원회에 속해있다는 사항이니까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로 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정리해 놓고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행정심판위원회 선례는 어떻습니까?

<○○○ 팀장>

- 도시계획위원의 명단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행정심판을 한 적은 없었고,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단 등에 있어서는 공개하라는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입니다.

<○○○ 위원>

- 인사위원회는 빼놓고 대부분 공개가 됐죠?

<○○○ 팀장>

- 인사위원도 과거위원은 공개하도록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뉘더라고요.

<○○○ 위원>

- 2011년 시장님이 부임하기 전에는 명단이 공개된 적 없고요, 그 뒤로 파이시티 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회의록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가 이 위원회 명단을 선도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2004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명분은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 위원〉

- 작년에 우리가 논의했던 안건을 보면 전체 위원명단은 공개하고 참석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위원〉

- 작년 참석위원 명단을 왜 비공개했냐 하면 참석위원들이 다 가부를 나누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동의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하시고 참석하신 분들이 사실 가결을 하신 분들이라는 설명을 주셔서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석위원 부분도 2012년도에는 공개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사전변경을 해서 공개여부를 바꿨지만, 전체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 위원〉

- 이것이 지금의 전체명단 공개여부이면 다를 텐데, 과거에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비공개를 했고 그 시절에는 그게 정당하다고 느껴졌는데, 이 시점에 와서 과거명단을 공개하자라고 하니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

- 만약에 39명의 명단이 공개되면 업무상 어떤 지장을 초래합니까?

〈○○○ 팀장〉

-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찾아가셔서 ‘그때 왜 우리가 2종이 됐느냐’라고,

〈○○○ 위원〉

○ 그러면 39명을 일일이 찾아갈 수 있습니까?

〈○○○ 팀장〉

○ 그러시고도 남죠. 지금 상당량의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됐습니다. 작년 9월 국정감사 이후에 민원 처리하느라 저희 과가 마비될 정도였고,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있어서도 시일이 지났다는 경고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1, 2, 3단지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계신 상황들이고요.

〈○○○ 위원〉

○ 한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분담을 해서 39명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까? ○○대 교수님도 찾아가 방해를 해서 그만두시겠다고 하는 것을 설득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주무관〉

○ 그분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특히 외부위원들 같은 경우는 출석률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거의 그분들이 결정을 했다고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위원〉

○ 찾아가는 항의하는 것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팀장〉

○ 저희가 주장하는 '중세분화의 매뉴얼대로 목동1~3단지는 정확하게 종 결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뒤집어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기 위한 자료

들을 일일이 찾을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지금 그런 자료를 찾기 위해서 민원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 위원들한테 불편이 따를 수도 있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위원으로 다시 위촉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 팀장>

-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은,

<○○○ 위원>

- 지금은 명단공개를 다 하고 있으니까 위원 선임하는 것과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 위원>

- 그분도 한 번 팀이 지나면 다시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 팀장>

- 그렇죠.

<○○○ 위원>

- 지금은 공개지만 당시로는 공개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공개되면 다시 위촉하기 어렵게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 위원>

- 그런 분들은 당연히 선임이 어렵죠. 지금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분들한테 통지는 해 줘야 됩니까?

<○○○ 위원>

-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통지문제는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 위원>

- 제3자라는 것은 정보를 청구한 당사자와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분들은 임기가 이미 끝난 옛날 위원으로 있었던 분이고, 지금은 공무수탁사인도 아닌 상태인데 제3자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면 당사자에게 물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 위원>

- 지금 우려하시는 상황이 2004년도 당시 위원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재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는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위촉이 어렵다는 문제도 고려대상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비공개가 필요한 이유가 단지 위원님들에게 가해질 개인적인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인지, 과거 위원명단의 공개가 어떻게 업무상 지장을 유발하거나 행정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 팀장>

- 도시계획위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

는 도시계획적 행위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심의기관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소신 있게 발표를 하셔야 되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 서울의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 그런 부분 속에서 위원님들이 과거의 것들까지 공개되고, 어느 교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면, 회의에서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부분에 있어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발언을 해서 그것이 의견으로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제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

- 어떤 기록물도 시간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도 상당시간이 경과하면 공개되는 것이 맞는데, 위원님께서 장래에도 자기가 했던 것이 완벽하게 영구히 비밀로 남아있을 것을 기대하고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 위원>

- 2017년도에 참석위원 명단은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전체명단 공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위원>

- 전체명단은 다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2012년부터 전체명단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 과거 전체명단에 대한 공개결정은 아예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

- 2005년 명단이 공개 결정된 사례가 있네요.

〈○○○ 위원〉

- 2012년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2005년, 2008년 명단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 위원〉

- 그 사건 때문에 공개를 한 것이지, 전체를 공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참석명단은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이 심의회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의 명단은 공개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 위원〉

- 회의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결정사항에 들어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이 결정사항에 그렇게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요.

〈○○○ 위원〉

- 2017년 회의에서는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 위원〉

- 2012년 심의 회의록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원〉

- 언뜻 생각하면 비공개가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과거에 비

공개했던 것을 현재 시점에서 다 공개하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있겠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주무부서 팀장님이 고려하시는 것은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도시계획위원의 명단은 다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고, 전국의 도시계획위원 명단이 다 공개되어야 되는 똑같은 문제가 걸려있겠죠. 그러면 그에 타당한가라는 고려를 함께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 위원〉

-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면 2012년도에 파이스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실제로 파이스티 때 상당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앞으로 공개로 전환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불이익보다 공개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익이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05년, 2008년 명단을 언론에다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 선임이 어렵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렵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미 다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 다만, 민원인들이 자신의 재산권 때문에 이 분들을 찾아갈 수는 있겠죠. 지금 목동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범법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문제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비공개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공개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

- 저도 초반에는 소급효 부분 때문에 걸리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

으로 그분들이 겪는 것이야 차치하고라도 공개해서 얻는 실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건도 아니고 기록은 사후에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서 저도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2012년도 경부터 공개하기로 하면서 공익적인 측면과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다 비교형량을 해서 공개를하기로 했었던 문제이고요. 오히려 이미 임기가 종료되고 사건이 다 끝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사안이라면 우려되는 상황과 공개했을 때의 실익과 공익적인 측면을 비교형량을 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무부서에서 우려하시는 바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이미 끝난 것이라 다른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업무수행 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현재 위원명단이 오히려 과거의 명단보다 협박이나 로비 같은 것을 통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이미 대세고 추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더욱 과거의 명단이라면 업무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 찾아가더라도 이분들은 회의 내용을 발설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결할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크게 얽혔기 때문에 그럴수록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소속까지도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름과 직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과 직업만 공개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대학 교수인지 소속까지도 공개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 아까 ○○○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명도 있을 수 있고, 교수도 같은 이름의 교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특정해 줘서 소속까지 밝혀주는 것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명단, 소속을 다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다만 하나는 과거에 위원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통지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물론 저는 궁극적으로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일단 해석상으로는 제3자라고만 되어 있고, 제3자라고 하면 일반적인 해석론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자와 그 청구를 받은 상대방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이고, 현직 공무원이나 공무수탁사인다면 또 달리 봐야 겠지만 과거에 이미 임기가 끝난 공무수탁사인의 경우까지 제3자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또 한 번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로 말미암아 공개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내 정보가 공개되는구나' 하는 정도는 통지를 받을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3자에 포함시킬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를 만약에 한다면 그 전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느냐, 통지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를 지금 따지는 겁니다.
- 만약에 제3자로 봐서 통지를 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 30일간 공개가 딜레이가 됩니다. 정보게시일까지 30일간의 텀을 뒤야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이런 경우 공무수행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

지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그 전에 이분들한테 통지를 해 줘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공개입니다.

<○○○ 위원>

-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제3자에게 통지해야 되는지 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는 주어진 이 사건에서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통지여부는 주무부서에서 일단 유권해석을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통지를 논해서 우리가 제3자 통지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추가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오늘 회의에서는 공개 여부만 결정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제3자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아까 소속 말씀하셨는데 소속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까? 이때가 2004년이면 지금 벌써 14년이 지났는데,

<○○○ 위원>

- 당시 소속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위원>

- 다른 의견 없으시면, 팀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팀장>

- 파이시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전제된 사안이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목동의 종세분화 부분은 매뉴얼대로 정확히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많은 민원이 왔을 때 여러 번 검토한 결과 정확히 됐다라는 것들이 주무관청의 의견입니다. 적법하게 잘 처리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기 재산권과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한 끝에 이분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이것들이 시의 전체적인 기조 속에서 만약에 공개되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전체기조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드리되 위원회에서의 결정을 저희는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서도 이것이 적법하게 된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게 저희 도시계획국의 현실이고, 많은 분들이 집적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특성상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서 비공개로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 위원>

- 고맙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심의회가 담당해야 될 기능이, 역할이 또 주무부서의 고민과 시민의 알권리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저희 심의회의 역할입니다.
- 심의위원들이 고민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이의신청 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23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이상으로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